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9. 7. 4.(목)

자료문의 : 형사3부장실

전화번호: 052-228-4306 주책임자: 부장검사 허인석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황의수

전화 052-257-0300 / 팩스 052-228-4320

제 목

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 수사결과

-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¹⁾
 제조업체 ¬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 6.경부터 2018. 9.경까지 26개 업체에 1,225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해외 업체에 11억원 상당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금일(7. 4.) 원산지 조작에 가담한 8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 ※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회사의 로고, KOREA'를 새로 마킹하여 판매
- □ 원산지 조작 플랜지는 **발전소**,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 시설에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도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사용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처에 수사결과 통보**하였음

¹⁾ 플랜지(Flange):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으로, 관 지름이 큰 관, 내부의 압력이 높은 관, 또는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관에 사용되고, 정유시설,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시설에 주로 사용됨.

I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 주요 피고인
- A○○(73세), ¬회사 회장
- B○○(68세), ¬회사 前 대표이사
- C○○(58세), ¬회사 생산총괄이사
- D○○(51세), ⊏회사 대표이사
- 범죄사실 요지(별지 피고인별 범죄사실 요지 참조)
- 2008. 6.~2018. 9. 중국 등에서 수입한 플랜지를 공급받아 자체 제작한 물건인 처럼 마킹하여 원산지를 조작한 후, 1,225억원 상당의 플랜지를 26개 업체에 판매하여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등
- 2015. 7.~2018. 10. 위와 같이 원산지를 조작한 **11억원** 상당의 플랜지를 해외 6개국에 수출하고, 국내산으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위반

Ⅱ 수사 경과

- 2019. 1. 울산세관 송치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인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어 내사 착수
- 2019. 4. 서울, 울산 등 대상 업체 3군데 **압수수색**
- 2019. 4.~6. 피의자, 참고인 등 조사
-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통하여, 2008. 6.경부터 2018. 9.경까지 1,225억원을 판매한 사실, 다수의 인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 주요 산업기반시설에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사용된 사실 확인됨
- 피의자들 8명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인지
- 2019. 7. 4. 불구속구공판

Ⅲ 수사 의의

- 원산지 조작 플랜지의 대규모 유통 사실 규명
 -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어,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시설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
 - ※ 일부 피해회사는 본건 수사를 통하여 원산지 조작 플랜지를 공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안전성 차원에서 기 설치한 플랜지를 철거하고 새로 국내산 플랜지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
 - 원산지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 플랜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는 실정임
 - ※ 시험성적서 : 플랜지의 소재 함량 비율 및 인장강도 등의 수치가 기재된 서류
- 안전성에 대한 사전점검 필요성 통보
 -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사용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 행정부처에 수사결과 통보. 끝.

[별지]

	피의자	직책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A〇〇 (73세)	ㄱ회사 회장	 ▶ 2008. 6.~2018. 9.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1,225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 2015. 7.~2018. 10. 원산지 조작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2019. 7. 4. 불구속기소
2	B〇〇 (68세)	ᄀ회사 前 대표이사	▶2008. 6.~2014. 12.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911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상동
3	C〇〇 (58세)	¬회사 생산총괄이사	 ▶ 2008. 6.~2018. 9.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1,225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 2015. 7.~2018. 10. 원산지 조작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상동
4	D〇〇 (51세)	⊏회사 대표이사	A○○과 동일	상동
5	E〇〇 (66세)	ㄱ회사 前 대표이사	 ▶ 2015. 1.~2017. 11.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215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 2015. 1.~2017. 11. 원산지 조작 플랜지 7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상동
6	F○○ (53세)	¬회사 대표이사	▶ 2017. 11.~2018. 9.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97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 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 2017. 11.~2018. 9. 원산지 조작 플랜지 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상동
7	G〇〇 (55세)	ㄱ회사 이사	A○○과 동일	상동
8	A회사	플랜지 제조회사	양벌규정 적용	상동